

의안  
번호

356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#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2021. 06. 09.

전문위원 김 동 성

### 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이호건의원 외 16명

나. 의안번호 : 제356호

다. 제출일자 : 2021. 05. 27.

라. 회부일자 : 2021. 05. 28.

### 2. 제안이유

-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,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~안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- 다. 상시 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- 라.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- 마.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)
- 바. 교육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11조)
- 사. 불법촬영 점검사항의 표시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12조)
- 아. 홍보,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(안 제13조~제14조)

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입법예고
  - 기 간 : 2021. 05. 28. ~ 2021. 06. 04.
  - 의 견 : 의견 없음.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개요

- 본 조례안은 소형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 관련 범죄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,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,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- 「2019. 경찰통계연보」에 따르면, 불법촬영 범죄건수가 2017년에는 6,465건에 달하다가 2018년 5,925건, 2019년 5,762건으로 소폭 줄어들었으나, 여전히 불법촬영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는 추세이고,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나타나고 있어 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.

#### 불법촬영 발생 및 피해자현황

(단위 : 건, %)						
연도	발생건수	검거건수	검거율	피해자현황		
				남성	여성	불상
2017	6,465	6,220	96.2	199	5,515	751
2018	5,925	5,613	94.7	255	4,912	758
2019	5,762	5,442	94.4	315	4,683	764

※ 경찰청 범죄통계 <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> 참조

- 따라서 국민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.
-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성북구는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총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, 감시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.

## 성북구 공중화장실 및 시민감시단 운영현황

공중화장실 현황

(단위 : 개소)

계	공중화장실	개방화장실	이동화장실	간이화장실	유료화장실	비고
160	138	21	1	0	0	

탐지기 수량 보유현황

(단위 : 대)

총계	장비별		
	렌즈형탐지기	전자파탐지기	영상수신기
49	41	6	2

성북구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: 2021년 신규사업

- 사업기간 : 2021. 3월 ~ 12월,
- 사업내용 : 시민 참여형 불법촬영 점검 및 예방 캠페인 활동
- 활동인원 : 10명(공개모집 선발 완료) / 2인 1조, 5개조 활동
  - 불법촬영 예방에 관심 있고, 자원봉사 형태 활동이 가능한 여성
- 운영방법 : 월2회(일 3시간 기준) 점검,
- 점검대상 : 민간개방화장실 및 공중화장실 등

활동(점검)실적

(2021. 5. 31. 기준)

인원	활동조	합동 점검	조별 점검(개소)			비고
			합계	화장실	샤워장	
10명	5개조 (2인 1조)	1회	82	75	7	* 유관기관 합동점검 - 추진일자 : 2021. 3. 25.(목) - 장 소 : 한국예술종합학교 - 참여기관 : 성북구불법촬영시민감시단, 중암경찰서, 성북구청 - 점검시설 : 36개소(화장실 및 샤워실) - 점검결과 : 특이사항 없음

## 나. 주요내용

-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,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구청장의 책무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5조와 제6조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공중화장실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, 민간화장실의 경우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에 따라 불법촬영 기기 점검을 실시하거나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장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화장실의 점검방안 마련하였음.
-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신고체계의 마련과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,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
- 안 제10조와 제11조는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대한 화장실 관리자의 협조 및 불법촬영 점검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불법촬영 점검사항과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물의 제작 및 보급과 같은 홍보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## 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추진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시의 적절하다고 사료되며,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- 참고로, 2021. 5월 현재 전국 81개 광역·기초지자체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에 관련한 조례를 운영 중이며, 서울은 서울특별시와 강북, 관악 등 10개구에서 조례를 운영 중에 있음.